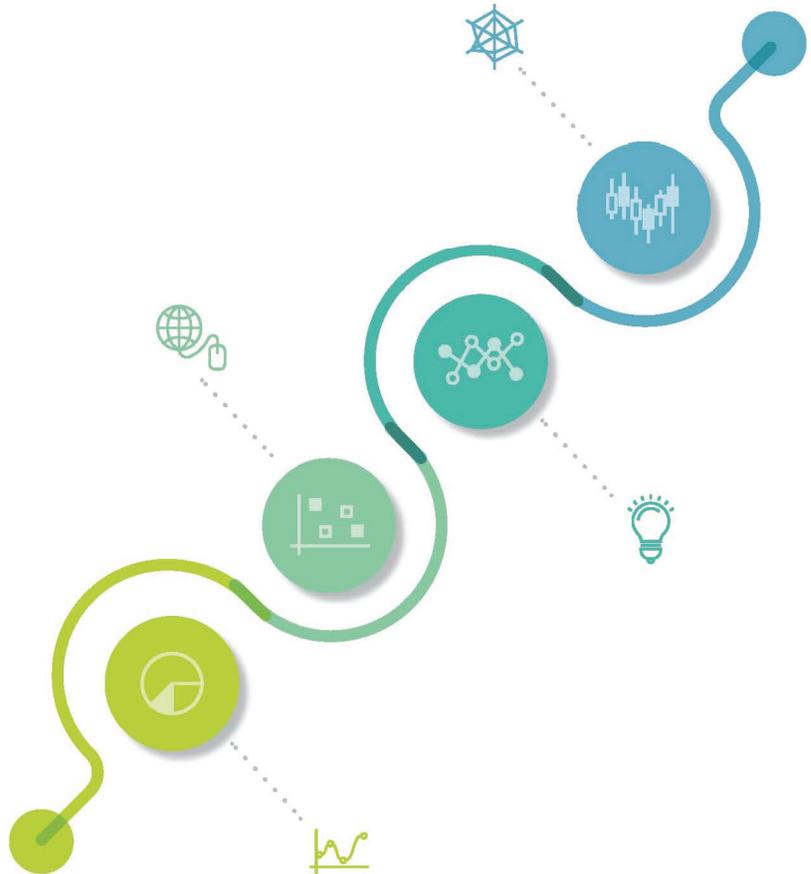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방안



연구진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요약

□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 필요
- 사회적 투자자(공익재단, 기부자 등)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필요

□ 주요 개념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민간의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하는 계약방식으로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실제 거래가능한 매개체로서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함
 - SIB는 명칭에 ‘채권(bond)’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확정금리부 증권이 아닌 성과에 따른 가변적 수익 가능성과 손실 리스크가 상존하는 ‘계약(contract)’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 SIB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사회적 목적 사업을 총칭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사업의 형식을 통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객관적인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방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악영향을 예방

- 민간의 재원과 전문기관의 문제해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민·관협치 구현

대상 사업 및 조건

○ 보상사업에 적합한 사업

- 효과검증이 필요한 신규 사업
-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
- 현재 정부예산사업보다 공익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사업

○ 보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평가지표가 객관적·정량적일 것
- 성과보상금(사업비+인센티브) < 장기적 행정/사회비용 절감액을 달성할 것

기대효과

○ SIB 도입시 정부와 보상사업 투자자 사업성과를 동시에 개선 가능

- 보상사업 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
- 정부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 예산 효율성이 증가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 가능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4
제2장 SIB의 이해	7
제1절 SIB의 개념	9
1. 개념	9
2. 사회성과보상사업	9
제2절 SIB 도입배경	11
1. 도입배경	11
2. 거버넌스(Governance)와 SIB	11
3. 지방재정과 SIB	12
4. 사회적 경제와 SIB	18
제3절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기관 및 운영구조	20
1. 참여기관	20
2. 운영구조	21
3. 추진조건	22
제4절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23
1. 기대효과	23
2. 고려사항	23
제3장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매뉴얼	27
제1절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	29

1. 개념정의	29
2. SIB의 성격	31
3. 보상사업의 목적	33
4. 보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34
제2절 보상사업 추진절차	39
1. 사업추진 개요	39
2. 사전 준비사항	41
3. 세부 단계별 사업추진 절차	42
제3절 사회성과보상사업 공모 및 계약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	57
1. 개요	57
2. 협상에 의한 계약	58
3. 입찰과 계약대상자 결정	58
4. 기타 사항	64
제4절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 및 보상	65
1. 사업평가	65
2. 성과보상	66
제4장 정책제언	67
제1절 보상사업 추진근거 마련	69
1. 제도측면	69
2. 운영측면	70
제2절 정책적 고려사항	72



【참고문헌】 73

【부록】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등 77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기존 공공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 비교	10
<표 2-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 추이	15
<표 2-3> 분야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과 비중(2017년)	16
<표 2-4> 원금 보장형 / 비보장형 SIB의 장·단점	24
<표 3-1> 보상사업 각 주체별 역할(예시)	30
<표 3-2> 임팩트 투자와 일반투자	32
<표 3-3> 적합 사업(예시)	35
<표 3-4> 부적합 사업(예시)	35
<표 3-5> 보상사업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요소(예시)	47
<표 3-6> 보상사업 비교대상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요소(예시)	48
<표 3-7> 서울시 성과보상사업의 성과목표 체계(예시)	49
<표 3-8> 투자자의 SIB 자금투입 방식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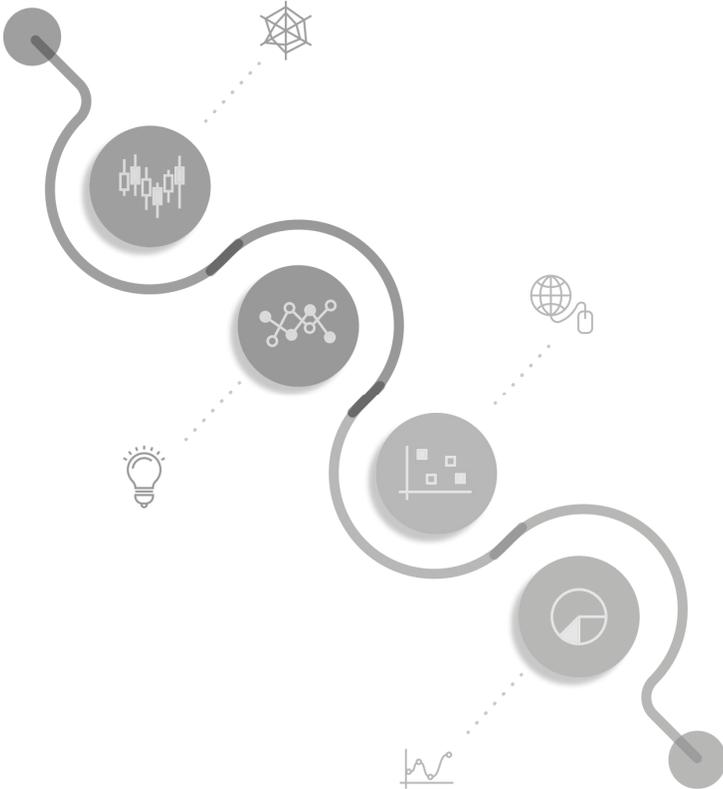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그림 2-1> 지방세와 이전재정 추이	14
<그림 2-2> 사회적 기업 육성 SIB(예시)	19
<그림 2-3>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	21
<그림 3-1>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차이점	33
<그림 3-2> 보상사업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개념도(예시)	33
<그림 3-3> 보상사업의 범위	39
<그림 3-4> 보상사업 추진 흐름도	40
<그림 3-5> 보상사업 추진절차 흐름도-종합	41
<그림 3-6>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42
<그림 3-7> 보상사업 사업비 산정 방법	51
<그림 3-8> 보상사업 공모 및 계약절차 흐름도	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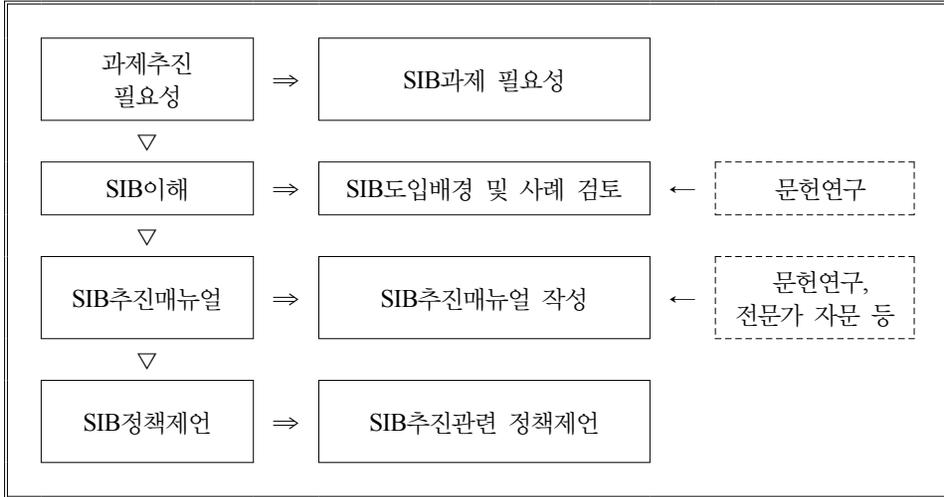
제1절 연구목적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사회적 또는 공익적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자치단체)와 사전에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운영기관)에게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투자모델로 정의할 수 있음
- SIB는 영국에서 2010년에 대규모 행정비용절감과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한 이후 선진 주요 국가에서도 도입·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도입)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음
- 그러나 SIB사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입 및 추진에 따른 여러 고려 사항 및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및 지침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뉴얼 작성을 통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SIB방식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론 및 절차 등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공하고 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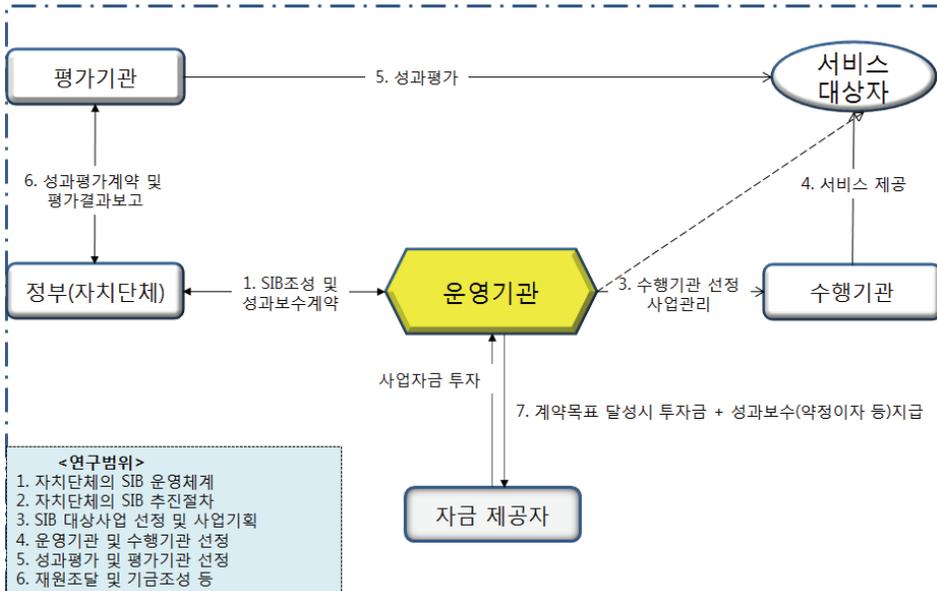
제2절 연구범위

-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관련 국내외 관련 자료 및 사례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제도 정비방향 검토

<그림 1-1> 연구 흐름도



참고: SIB 추진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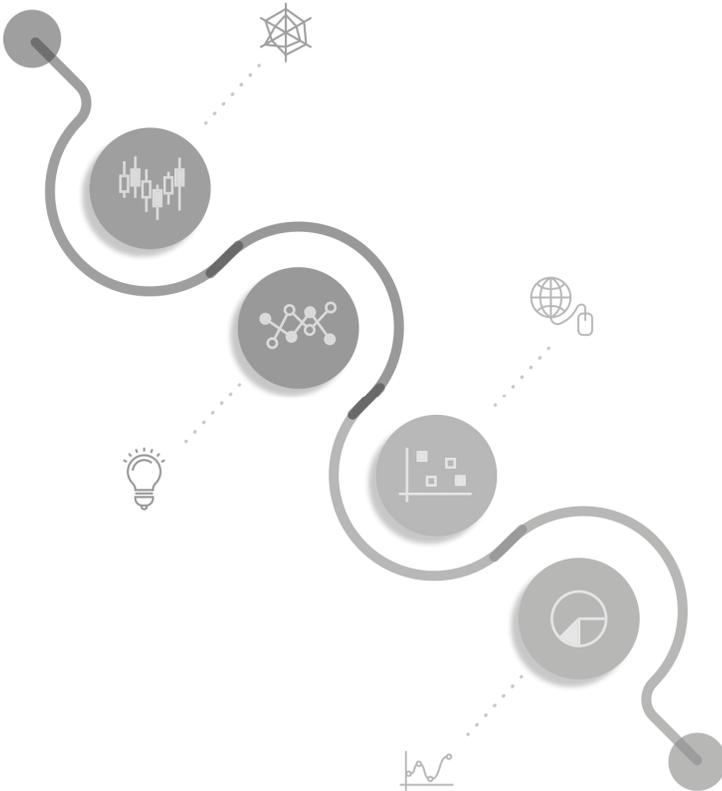
제2장 SIB의 이해

제1절 SIB의 개념

제2절 SIB 도입배경

제3절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기관 및 운영구조

제4절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제 2 장

SIB의 이해

제1절 SIB의 개념

1. 개념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은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으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하는 계약방식임
- SIB는 명칭에 ‘채권(bond)’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확정금리부 증권이 아닌 성과에 따른 가변적 수익 가능성과 손실 리스크가 상존하는 ‘계약(contract)’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실제로 운영기관이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SIB를 발행하며, 해외에서도 SIB는 통상적인 채권으로 발행되지 않고 계약을 통해 이행됨
-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실제 거래가능한 매개체로서의 SIB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볼 수 있음

2. 사회성과보상사업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SIB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사회적 목적 사업을 총칭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사업의 형식을 통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객관적인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방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악영향을 예방
- 민간의 재원과 전문기관의 문제해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민관협치 구현

<표 2-1> 기존 공공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 비교¹⁾

기존 공공사업 - 비용기반 사전적 예산집행	사회성과보상사업 - 성과기반 사후적 예산집행
①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예산 집행 - 세금을 수행비용에 사용	①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 집행 - 세금을 사회적 성과 구매에 사용
②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대응 - 예방적 조치보다 사회적 비용, 문제 해결 비용 상승	② 사전예방적 사업에 집중 - 사후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 해결 비용이 드는 것을 예방
③ 위 1, 2번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 심화	③ 중장기적으로 정부 예산부족 문제 개선
④ 정부가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짐 - 납세자인 시민들이 리스크를 짐	④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분산됨 - SIB는 투자자에게 투자기회와 사회공헌 기회를 동시에 제공
⑤ 정부 중심의 사업수행 체계	⑤ 민·관 협치 실현 - 정부,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사업수행자, 성과평가자 등이 참여

-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예산을 집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활용의 효율성 제고
- 사업 성공시 사회문제의 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이 절감액의 일부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정부의 이익을 보전

1) 출처: <http://blog.naver.com/projustice/30180975624> 또는 http://projustice.kr/sib_intro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향상되고 예산 사용의 효율 증가

제2절 SIB 도입배경

1. 도입배경

- SIB(사회성과연계채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의 하나임
- 공공부문에서 SIB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공동체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인 재정수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에서 출발하였음
- 즉 SIB는 공공시장에서 부족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고심하던 주요 선진국(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2. 거버넌스(Governance)와 SIB

-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정부중심의 공공조직과 민간의 사적조직간 경계가 무의미해 지면서 나타나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로 기존의 정부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권위에 기초한 통치로서의 정부기능만이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수평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 즉, 거버넌스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새로운 체제, 제도, 매커니즘 및 운영방식이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 목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SIB사업은 사회적 공동체 강화 차원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촉매제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SIB는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공동체 강화정책 추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첫째,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개별 사회적 공동체 조직별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적 공동체 발전 청사진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 둘째, 개개의 조직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별로 각기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분절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가 사회 전체적인 생태계보다는 개별 조직의 지속성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고, 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에서도 자신들의 정책목표(보건, 지역개발,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음

3. 지방재정과 SIB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여건과 관련하여 SIB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면,
 - 저출산·고령화 및 환경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수요에 크게 미흡한 자주재정의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고, 최근 계속되는 저성장에 따른 국가 부채의 발생과 복지재정수요의 확대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배분(이양) 문제는 상존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총부채 규모는 거의 10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채무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증폭이 계속되고 있어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은 상존함
-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불건전한 재정운영 문제가 전체 지방재정의 위기 문제로 확산되어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지방재정의 위기나 파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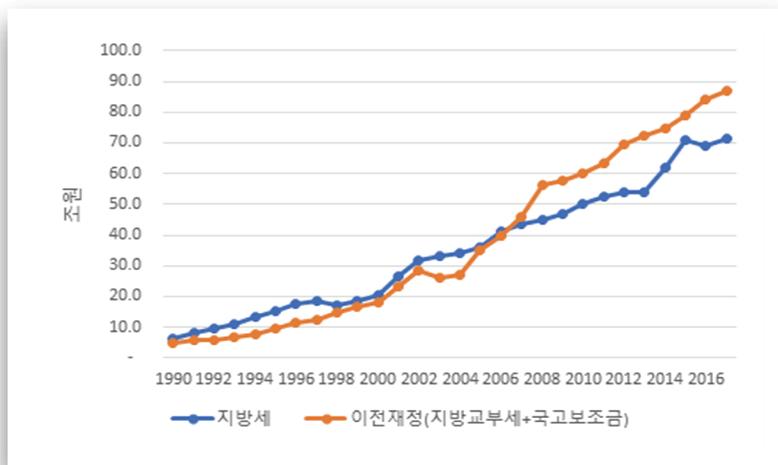
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음

- 예컨대, 부채에 의존한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 용인시 등의 경전철, 민자사업의 실패,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사업 등 지방공사를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 사례가 빈발하였음
-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역사회의 현안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서 비용절감, 사회적 투자,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의 자체사업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과 관련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주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급증이 불가피하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사회복지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책충은 매우 어려운 세입구조임
- 이로 인해 사회복지나 환경 관련 지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SOC 등)의 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확충이나 환경개선 등을 위한 자체사업을 SIB사업으로 설계하여 실시하면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림 2-1>과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규모 급증 및 의존도 심화가 불가피한 재정상황에서 자체세입의 기반 위축, 경상비용의 과중한 부담, 지방채무의 급증 및 통합재정 수지의 적자발생 등의 문제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곤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와 환경 등에 대한 자체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세원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탄력세율제도 외에 세수확충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역산업의 침체나 재난발생,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즉, 부동산관련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세원 확충이나 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과거 탄력세율제도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주민의 지방세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나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대응은 세원확충(국세이양 포함)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한계²⁾ 및 지역간 세원편재로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그림 2-1> 지방세와 이전재정 추이



2) 향후 국가재정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세입여건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수지의 악화 및 국가채무 누적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조치가 있게 될 경우 이에 지방재정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많은 정책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총량적 지출 상한제를 적용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세입기반의 확충, 자원배분의 재조정, 분야별 지출수준의 합리화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둘째, <표 2-2>에서 보듯이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복지 확대가 활발히 논의된 참여정부 시기부터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였고,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비중은 대폭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환경 등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의 확대 실시가 절실함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복지나 문화, 환경과 관련한 자체사업 즉, 사전적 예방활동을 통하여 사후적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 행정비용이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재정수요의 일부를 SIB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신장율
자체사업 비중	46.1	45.7	42.4	40.4	40.1	38.3	37.6	38.1	40.1	41.3	3.7
보조사업 비중	34.2	35.5	38.4	39.4	39.8	41.4	42.4	42	41.6	40.4	6.9
세출예산 (조원)	125.0	137.5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5.0

- 지방재정의 지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개발·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은 자체재원이란기 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표 2-3> 참조), 이러한 보조금의 지속적 증가는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음
- 특히, 2005년 이후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급증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하면서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는 복지예산 부담의 가중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입기반이 약화될 경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날 수 밖에 없음

<표 2-3> 분야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과 비중(2017년)

구분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일반공공행정	0.6	2.8	21.6	97.2
공공질서 및 안전	2.1	57.4	1.6	42.6
교육	0.5	4.2	11.3	95.8
문화 및 관광	5.6	49.6	5.7	50.4
환경보호	9.6	43.8	12.3	56.2
사회복지	70.6	89.4	8.4	10.6
보건	3.4	76.9	1.0	23.1
농림해양수산	13.3	76.3	4.1	23.7
산업, 중소기업	2.0	46.8	2.2	53.2
수송 및 교통	4.2	25.1	12.5	74.9
국토 및 지역개발	6.3	42.2	8.7	57.8
과학기술	0.1	14.1	0.4	85.9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예산개요, 2017

- 셋째,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정당간 경쟁적 (복지)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예산사업은 증가일로에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기능이 이양되는 사회복지 및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SIB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임
- 중앙정부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재정의 기능 중 국가적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 재배분에 지방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이 지역주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경쟁적 재정지출 분야(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의 수준과 한계는 설정되어 지방재정의 적절한 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를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

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앙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이관행정기능에 대한 비용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³⁾.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분권의 수준이 낮아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정당간 경쟁적(복지)재정지출 확대와 중앙정부의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능이양 및 복지사업 수요증대 등의 현안을 단순히 지방예산의 부족 문제로 인식하고서 SIB의 특징⁴⁾에서 그 해결 대안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역할 분담이 없이 지방정부에서 자체사업으로 SIB사업화 하여 추진할 경우 자칫 실패의 부담을 짊어 질 수도 있음. 특히 사회복지, 환경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기능분담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SIB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나 혜택은 중앙정부의 효과(재정부담 경감, 사업성공에 따른 효과 등)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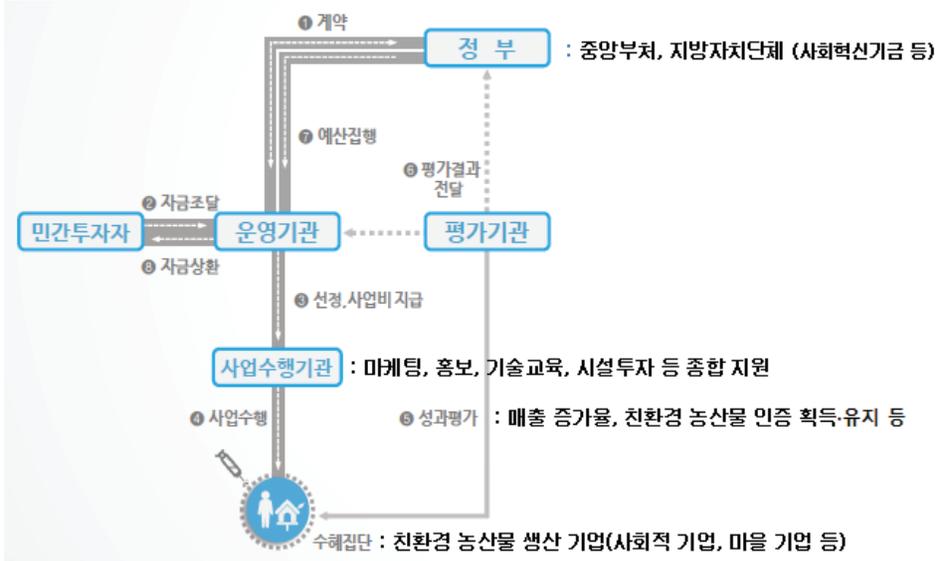
- SIB 사업 활성화는 정부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예산편성의 지양을 통한 궁극적인 예산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등의 재원확충 및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자체복지사업의 지역협조 유도, 귀농·귀촌 등 복지정책, 탈북자의 시장경제 사회에의 적응력 강화프로그램, 지역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인구감소 대책 등

- 3) 미국의 공공선택론자에 의한 재정분권이론과 신재정연방주의는 주정부 중심의 분권형 복지정책 거버넌스와 연방정부의 복지비 부담 축소 정책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은 곧 반복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영국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면서 복지비 지출을 축소하였고, 일본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대하면서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였음(이재원, 2012). 이와 같이 복지와 분권에 대한 외국의 정책사례는 다양하였지만,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은 증대되고 있음
- 4) SIB사업의 특징으로 정부가 예산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성과몰입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사업의 성과가 목표수준에 미달시에도 정부리스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4. 사회적 경제와 SIB

- 사회적 경제와 SIB 관련하여 논의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으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자본 등 “사회적”접근에 기초한 개념임
-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구성원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있으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관련 기본법(안)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정의를 하고 있음(신계륜 등 65인(2014.10), 윤호중 등 27인(16.8), 유승민 등 15인(16.10)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임)
-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의해 활성화가 가능하며, SIB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첫째, 사회적 기업이 SIB의 ‘투자(중개)기관’, ‘운영기관’,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 투자/기금 조성/사업 기획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업무를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의 수 역시 증가할 수 있음
 - 둘째, 사회적 기업을 SIB의 수혜집단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SIB’를 추진할 수 있음. SIB의 목표를 사회적 기업의 매출 증가, 사회적 효과 증대 등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지원, 홍보, 교육,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법임

<그림 2-2> 사회적 기업 육성 SIB(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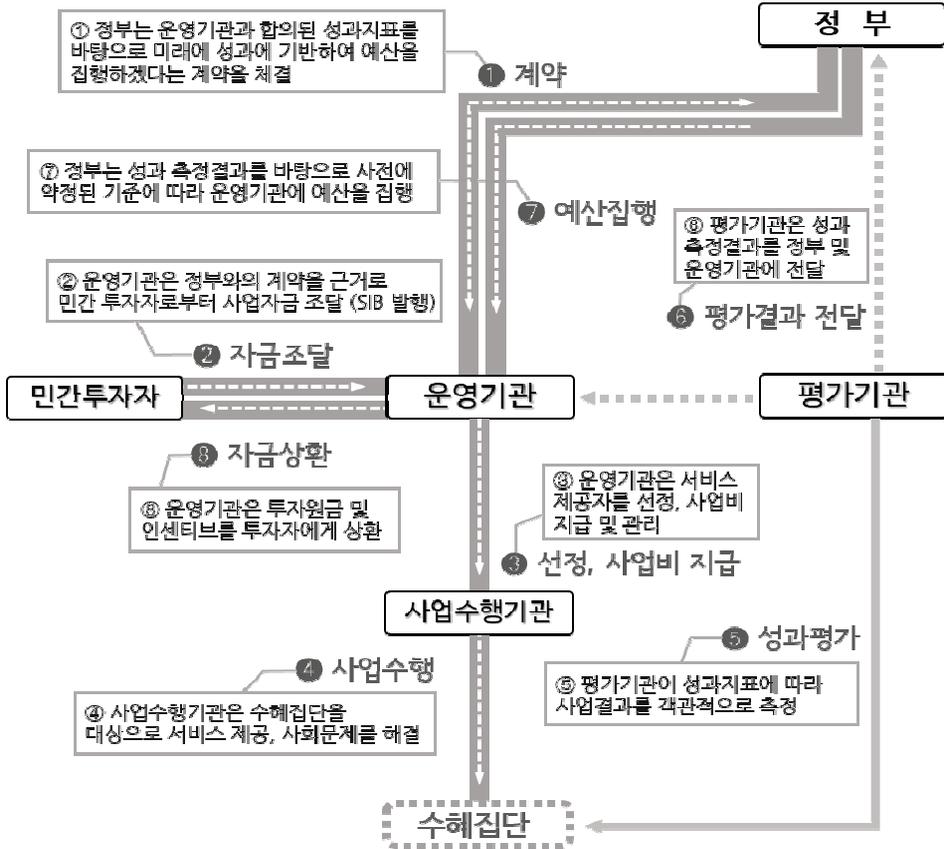
제3절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기관 및 운영구조

1. 참여기관

- 정부(자치단체) :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시 예산을 집행하는 성과보상자(성과구매자)
 - 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또는 공익사업에 재정을 사용하는 재단법인 등도 성과보상자로 참여 가능
- 운영기관 : 정부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 모집,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관리 등 SIB 사업을 총괄하는 단체
 - 자발적인 민간 투자자 유치와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기관을 선정해야 함
 - 민간 투자자 모집 및 성과보상금의 배분을 위해 투자계약 체결 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함
 - 투자자 모집 행위 자체가 법인의 영리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증권사, 투자중개회사, 대기업 등은 운영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음
- 투자자 : SIB방식의 투자를 통해 공공사업의 리스크를 이전받는 주체로서 사업 성공 시 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받고, 실패 시 원금의 손실을 감당
 - 세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공사업의 리스크가 납세자에게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세금이 투자금으로 유입되어 사업수행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면, 사업 실패시 정부는 민간 투자자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짐
- 수행기관 : 목표한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단체로서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 평가기관 : 공정한 성과 측정을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사업 주제별로 사용되는 지표가 다르고 요구되는 경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제와 성과지표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정

2. 운영구조

<그림 2-3>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



※ 여기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의 표준적인 형태이며, 자문기관 또는 투자자 원금보장기금(민간 재원)을 추가하는 등의 변형도 가능

*출처: 곽제훈, 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한국국제협력단

3. 추진조건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모든 종류의 공공정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추진 가능함
- 조건 1 :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비용이 절감되는 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
 - 문제가 방지되었을 때 사회비용 또는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사회문제로서 SIB 사업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성공시 절감되는 사회비용이 총 사업비보다 커야 함
 -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사업도 그 가치가 총 사업비보다 클 경우 SIB로 추진 가능
- 조건 2 :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사업
 -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성과측정만 가능한 사업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SIB 사업에 적합하지 않음
- 조건 3 : 기본적인 복지사업, 또는 자본만 투입하면 바로 결과가 도출되는 사업은 “제외”
 -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하여 시혜적 지원이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사업은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음
 - 사회문제의 해결에 사업방법과 관계없이 자본만 투입하면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는 사업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평가비 등을 지출하면서 SIB를 추진할 필요는 없음

제4절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1. 기대효과

- 기존의 정부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사업수행 비용에 예산을 집행 하였으나, 성공하는 사업에만 약정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 신규 사업에 추진에 적합
- 사업 성공시 사회문제의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절감액의 일부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위험부담 해소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함으로써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향상되고 예산 사용의 효율이 증가하며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이 가능

2. 고려사항

1) 투자자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SIB 형태

- SIB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원금 비보장형 SIB로서 이는 사업 실패 시 투자자금의 상환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자가 사업의 리스크를 지고 가는 형태
- 그러나 미국 뉴욕시에서 SIB를 추진할 때 블룸버그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이 기부를 통해 원금보장기금(Guarantee Fund)을 조성하여 사업 실패 시 투자자의 원금을 75%까지 보호해 주고 있음
- 원금보장기금을 조성하는 명분과 이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투자자의 부담 완화로 SIB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성공 시 보장기금이 유지되어 장기적으로 재활용 가능
 - 투자자의 위험이 감소함으로써 투자 인센티브를 낮추어 정부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음

- 정부와 투자자의 부담이 낮아짐으로써 더욱 혁신적인 사업 수행 가능
- 원금보장기금을 조성할 경우 재원은 납세자의 세금이 아닌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재원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할 경우 SIB 사업 리스크는 납세자에게 이전되기 때문
- 보장률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만 원금보장기금으로 조성하여도 됨
 - 예: 원금보장률이 50%일 경우 사업비의 절반만 필요
-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성과 달성도에 따라 원금을 보장하는 차등적 원금보장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표 2-4> 원금 보장형 / 비보장형 SIB의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원금 비보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SIB - 민간 원금보장기관이 없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모집의 난이도 높음
원금 보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모집이 용이해지고, SIB 시장이 활성화 됨 - 투자자 위험 감소로 성과기준을 높이거나, 인센티브를 낮출 수 있음 (정부 부담이 더욱 경감됨) - 투자자 위험 감소로 보다 혁신적인 사업 수행 가능 - 사업 성공 시 보장기금 잔액을 다른 SIB 사업을 위해 재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B 투자금 모집과 별도로 보장기금을 조성해야 함

2) 사업기간

- SIB 사업기간은 문제가 개선되고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 개입 프로그램과 성과 간의 인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 규모, 목표의 난이도 등 특성에 따라 적정 수행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음
- 해외 SIB의 평균적인 사업기간은 4~5년(국내의 경우 2~3년 수준)
 - 2017년 현재 세계 최장기 사례는 2014년부터 미국 시카고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7년짜리 SIB 사업
- 사업기간이 길거나 수혜집단이 기간별 통계집단으로 구분될 경우, 중간평가 및 투자금 중도상환 방식의 적용도 가능

3) 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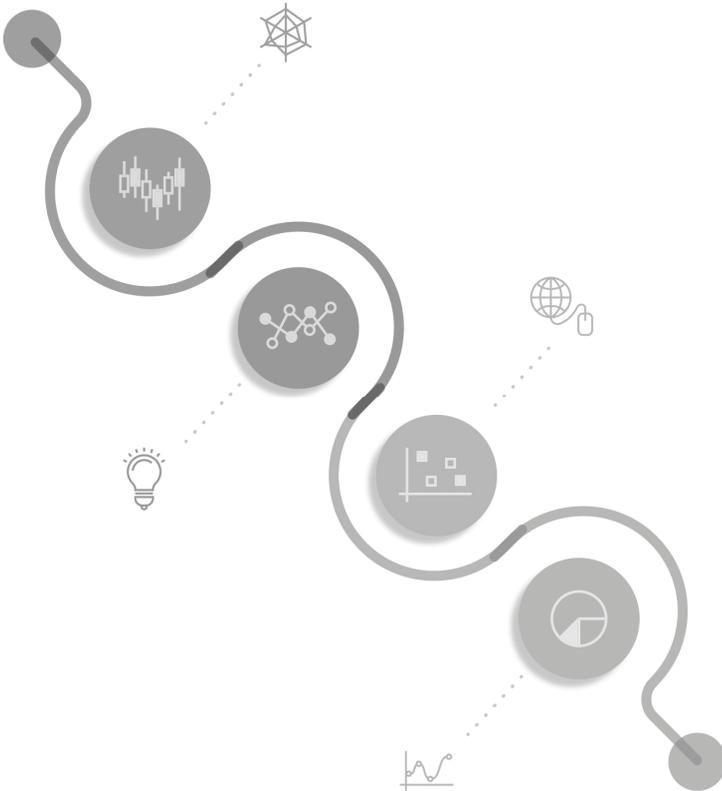
- 보상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연계된 사회문제일 개연성이 높음. 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문제는 여러 유관부서의 협력은 소통과 협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실제 부서간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인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보상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주관부서의 역할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전담 “위원회”조직 설치 등을 통한 협력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매뉴얼

제1절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

제2절 보상사업 추진절차

제3절 사회성과보상사업 공모 및 계약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



제 3 장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매뉴얼

- 이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선정 및 계약체결 방법 등 세부 고려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이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사업에 성과보상을 전제로 한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음

제1절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

1. 개념정의

- 사회성과: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의 전반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의미함
- 사회성과보상: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운영기관)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사업비 또는 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성과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 사회성과보상계약: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란 사회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에 성과보상 조건을 내용으로 체결한 약정을 의미함
-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 운영기관: 운영기관이란 자치단체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중간지원기관을 의미함
- 수행기관: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연계채권)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의미함

<표 3-1> 보상사업 각 주체별 역할(예시)

주체	주요 역할	주관기관(조직)
행정기관	- 사회적 과제의 발굴, 운영기관 등 각 관련 주체들을 연계 - 성과목표 달성시 성과에 따른 보상 등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업(서비스) 대상자	- 보상사업을 추진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의 대상	- 사업별로 다양(주민, 기업 등)
운영기관	- 보상사업 과제 발굴, 사업자 발굴 -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SIB 가능성 사전 조사, 수행기관의 조사·조정, 성과지표에 대한 조인·조정 - 사업종류와 추진상황별 다양한 역할 등	- 투자금 모집 및 투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수행기관	- 보상사업의 서비스 제공 주체 - 사회적 과제에 대한 효과적 서비스 제공 등	-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기업 및 단체 등
투자자 (자금제공자)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사업 실시 전 운영기관에 투자 -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보상사업으로 합의한 성과목표를 달성 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 등	- 임팩트투자기관, 기업, 금융기관, 재단, 사회공헌기관, 개인 등
제3자 평가기관	-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정량적 지표를 통해 보상사업 성과를 측정·평가 - 평가 결과의 보고 등	- 대학 등 평가전문 조직 및 리서치 전문 업체, 법인 등

2. SIB의 성격

-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의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사업목표의 달성수준에 따라 운영기관(중간지원기관)에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기관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계약
- SIB는 명칭에 ‘채권(bond)’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확정금리부 증권인 채권이 아니며 성과에 따라 변하는 수익과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운영기관이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SIB를 발행하며, 해외에서도 SIB는 통상적인 채권으로 발행되지 않고 계약을 통해 이행됨
-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실제 거래 가능한 매개체로서의 SIB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볼 수 있음
- 보상사업을 “계약”측면에서 보면, 사업추진 주체인 자치단체(정부)나 공공단체와 운영기관간 계약, 운영기관과 투자자와의 계약, 그리고 운영기관과 수행기관간 계약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각 주체간 계약(Contract)이라는 법적 관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과 같은 법제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법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임
 - 다만, 보상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참여주체(자치단체, 투자자, 운영기관, 수행기관 등)간 법적 분쟁소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통해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음

<표 3-2> 임팩트 투자와 일반투자

구 분	위 험	편 익
일반 투자	투자가 기대 이익을 낼 수 없거나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투자자의 출자한 자금에 대한 경제적 수익 (이자, 배당, 매각 이익 등)
임팩트 투자	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당초의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없을 가능성	투자자에게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자와 사회 전체에 대한 혜택

- 참고로,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투자금의 성격(영리 vs 공익)’, ‘사업의 성격(매출 발생 vs 사회문제 해결)’ 등 수익창출 조건 및 투자자의 동기부여 체계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민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도로, 철도 역사(驛舍), 항만 등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 후에 운영이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민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더 큰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익(사용자 편의, 저렴한 서비스 비용 등) 보다는 공익에 반비례하는 성과(높은 사용료 등)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투자자가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성과를 더 많이 달성해야 함. 사업기획 당시 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해야만 투자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목표는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매출과 상관없이, 공익적 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가 투자자의 수익과 연계되는 구조임
- 정리하면, 일반적인 민자사업은 공익을 감소시킬 때 투자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익이 증가해야만 투자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논리적 구조를 가짐. 따라서 사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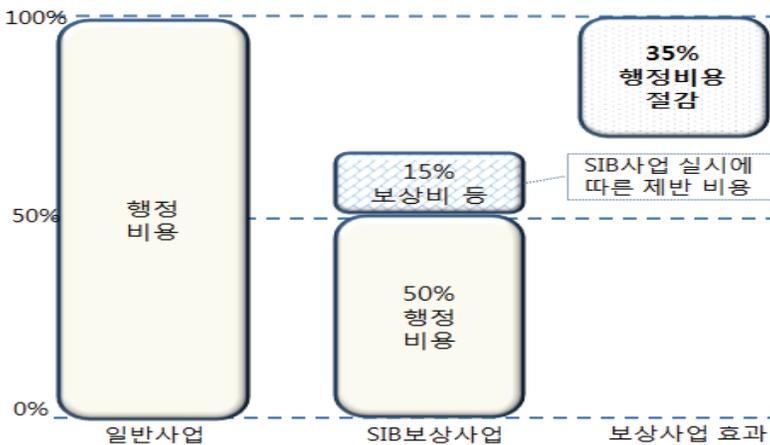
<그림 3-1>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차이점

민자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리 목적 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익/영리 목적 융합 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출 발생을 통한 투자자 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투자자 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익과 투자자 이익의 반비례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익과 투자자 이익의 비례성 (공익 증가 → 투자자 이익 증가)

3. 보상사업의 목적

- 보상사업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만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영역에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임. 사후에 성과를 구매함으로써 재정적 부담과 사업실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참여자가 성과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아짐

<그림 3-2> 보상사업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개념도(예시)



4. 보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1) 사업대상

- 보상사업은 지금까지 정부(행정)가 제공해 온 행정서비스를 보상사업을 통하여 대신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추가·보완하는 사업”과 “새로운 행정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있음
- 보상사업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 투자의 방법 중 하나로 연계채권(SIB)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과제나 사업도 존재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사업에 한정하여 보상사업을 추진을 검토해야 함
 - 정부예산사업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
 - ‘보상비 + 사업비 < 장기적 행정/사회비용 절감액’을 달성할 것
 -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미래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 지역의 다양한 사업주체간 연계를 통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
 - 보상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측정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을 것
- 또한 보상사업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면 결과가 산출되는 사업
 -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된 사업

<표 3-3> 적합 사업(예시)

적합 사업(예시)	
1.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	기존의 행정 서비스는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에 치중하는 구조로 사후에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사전에 방에 투입된 비용과 비교하여 더 많음. 즉,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상사업은 이러한 사전 예방적 사업추진에 적합함
2. 사회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사업	보상사업은 사업실패 위험을 자치단체(정부)에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적합함. SIB방식의 보상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효과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사업화나 제도화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표 3-4> 부적합 사업(예시)

부적합 사업(예시)	
1. 객관적 성과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측정이 어려운 사업	보상사업은 성과를 확인하고 지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작업 기반의 지불은 불필요하지만 추가적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 성과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업 등에는 부적합
2. SIB방식 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한 사업	일반적으로 보상사업은 추진구조가 복잡하고 조성 및 운영에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경우에는 SIB방식이외의 자금조달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음
3. 사회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일반화된 사업	사회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일반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절감의 여지 및 투자자의 이익도 적고, 성과 또한 예측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보상사업의 실익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이 널리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다른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보상사업의 추진을 통한 성과가 창출될 수 없는 경우 사업추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2) 사업범위

- 보상사업의 사업범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SIB방식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보상사업에 적합한 대상사업은 구체적으로 특정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개선을 통해 사회비용을 사전에 절감 또는 문제해결이 예측되는 사업으로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가 존재하거나,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보상사업의 법적 추진근거(조례제정 등)는 지방자치법 제3절(기능과 사무)과 관련된 사무가 주요 사업대상 범위이나, 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조례((가칭)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조례) 제정이 필요함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인 경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투자심사의 대상이 됨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14.11.29]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3) 사업예산 수립 및 성과구매 방법

- 정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보상사업의 예산 수립 방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①공적 기금과 ②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통해 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식 모두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상사업이 갖는 구조적 한계(사업 추진 후 성과구매 방식의 보상: 후불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상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법임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보상사업의 성격(다년도 사업, 성과구매방식 등)상 기금 사업을 통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임. 하지만 신규 기금 설치가 어렵고 기존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하고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자치단체장)할 수 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변경 불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15)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포함)
- <예시>
- ① 정책사업 1억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
 - ② 정책사업 1억증가, 재무활동 3억 증가 : 의결 필요
 - ③ 정책사업 3억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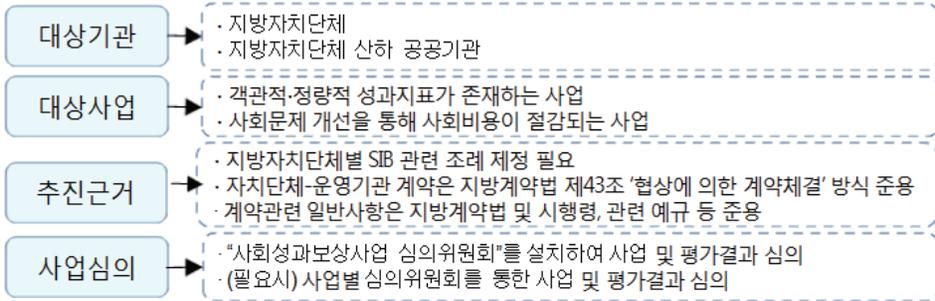
- 우발채무 행위인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13조)는 타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지방재정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범위 내인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함

제2절 보상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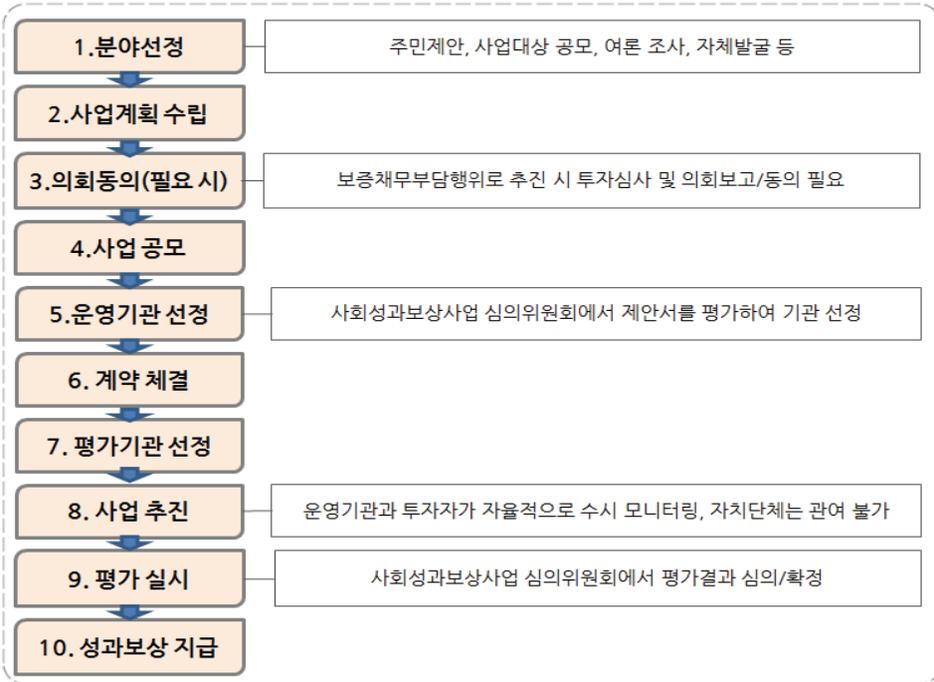
1. 사업추진 개요

- 보상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일반계약을 통한 사업추진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참여주체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는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측면이 있어 사업추진부서나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 기본적으로 보상사업의 추진절차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제를 준용하고 있으나, 보상사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단계별 검토사항은 <그림 3-3>의 흐름도와 같음

<그림 3-3> 보상사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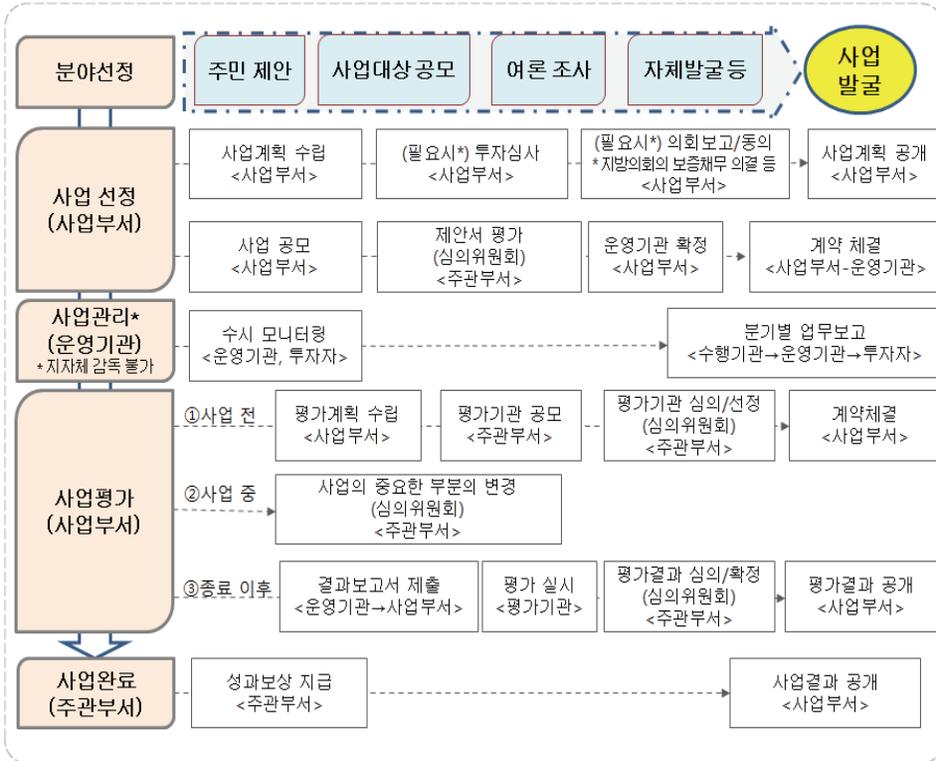


<그림 3-4> 보상사업 추진 흐름도



1. 분야선정: 보상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는 단계
2. 사업계획 수립: 사업분야를 결정한 뒤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보상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
3. 의회동의(필요시): SIB를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는 등 의회 동이가 필요한 경우 확정된 사업계획을 해당 자치단체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단계
4. 사업공모: 사업부서에서 최종 확정된 보상사업에 대한 전담운영기관을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는 단계
5. 운영기관 선정: 보상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그 제안서를 위원회가 심의/평가하는 단계
6. 계약체결: 사업부서와 공모결과 선정된 운영기관간 협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7. 평가기관 선정: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평가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보상사업 계약 체결 이후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위원회의 심의/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는 단계
8. 사업추진: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사업부서는 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관리감독을 지양해야 하는 단계
9. 평가실시: 사업부서에서는 보상사업 계약종료이후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상사업 결과보고서를 받고, 평가기관으로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받아 위원회에 보고/심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단계
10. 성과보상금 지급: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보상을 하고 보상사업의 추진성과를 공개하는 단계

<그림 3-5> 보상사업 추진절차 흐름도-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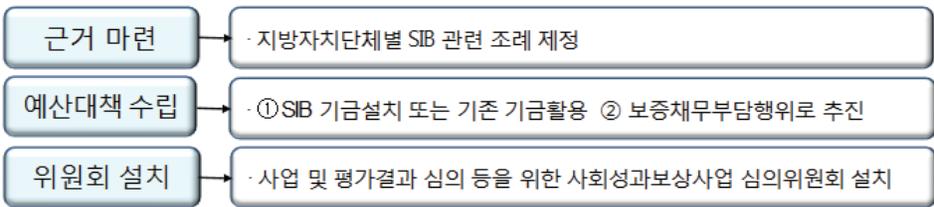
※ 주관부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자치단체 기획조정부서 등)
 사업부서: 특정 분야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보건/복지/사회적기업 등)

2. 사전 준비사항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기획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우선 SIB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단기적으로는 의회 동의를 통해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기금의 설치 또는 기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사회투자, 주제와 관련된 사업 분야(사회적 경제,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등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포함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그림 3-6>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3. 세부 단계별 사업추진 절차

1) 분야선정

-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사회의 시급한 문제나 지역공동체 발전에 긴요한 핵심문제 등을 사업화하고, 이를 우선 민간의 자금을 동원하여 해결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보상을 하는 것임
 - 이러한 방식의 사업추진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하며,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또는 주민의 궁극적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임
 - 따라서 최적의 분야선정은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대다수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분야선정은 주민제안, 사업공모, 여론조사, 자체발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택할 수 있으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 지역주민,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공문(수요)조사, 지역실태분석을 통한 수요분석, 지역주민(대표자) 토론회나 간담회, 민간부문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공모나 자체발굴을 통한 사업화의 경우 사업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사전검토 등)을 검토해야 함
- 사전검토는 특정 분야선정이 자치단체 내부(기관장 및 사업부서)에서 확정된 경우 사업화가 필요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최소한 절차임

※ 사전 검토시 고려사항

- 지역사회문제 진단을 통한 명확한 의제와 사업화 방향은 설정하였는가?
- 지역사회의 내부 사업수행역량 검토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① 해당 지역내 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총량은 충분한가?
 - ② 사업추진에 필요한 참여 주체별 협력내용 및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③ 이미 추진되고 있는 유사사업이 존재할 경우 차별성은 명확한가?

2) 계획수립

- 분야선정을 통하여 확정된 보상사업은 사업화 과정을 통하여 추진해야 하며, 관련 법제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이 매뉴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함
 - 사업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상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양식 별첨)
 - 사업명, 사업대상, 추진목적, 사업범위 및 예산, 기대효과 등
 - 사업 참여자격 및 선정방법, 공모의 경우 공모방법 및 절차 등

- 성과목표 설정, 평가방법,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등

※ 기본계획 포함 내용(예시)

-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별 역할(운영기관 및 수행기관)
- 사업예산 및 재정운영계획
 - 사업예산 편성 및 지출 등
- 성과목표(outcome)
- 성과에 따른 보상비용 지급 체계(수익구조)
- 예상 효과
- 사회적 비용 절감액 등 기대효과
- 평가계획: 평가기관 선정, 평가시기, 평가참여범위, 결과의 활용 등

- 보상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음(관련서식은 부록 붙임-1 참고)
 - 즉, 보상사업은 지역사회현안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서 사회적 과제 해결 등에 필요한 사업재원을 우선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통해 해결하는 채무기반의 사업임
 - 따라서 보상사업은 민간투자에 대한 기금이나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지급보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재정법 제37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사 필요
 -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경우 지방의회의 보증채무 의결을 받기 위한 의회보고 필요
- 보상사업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은 보상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사업자 참여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업추진계획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함

3) 성과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

- 보상사업은 성과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핵심(사회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사업계획 수립의 필수요소)
- 따라서 보상사업의 추진을 통해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방법(지표화 등)으로 설정해야 함
 - 해당 보상사업의 추진을 통해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
 - 보상사업의 성과목표는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이 달성하기 용이하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재무)지표로 설정해야 함

(서울시 사례)

※ 성과 목표, 지표, 측정 방법 수립 예 : 공동가정 이동 대상 사회성과보상 사업

사회성과 : 경계선급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아동 자립능력 향상

성과목표 : 사회성 향상, 지적능력 향상

성과지표 : 경계선급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 개선율, 사회부적응 행동 감소율

측정방법 : 웨슬러 지능검사, TRF

- 보상사업의 최종 성과목표 설정은 성과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어떠한 투입, 활동, 산출이 있었고, 그 성과가 달성된 후에 어떤 영향이 있어야 하는지를 설정하는 것임
- 그러나 보상사업의 추진에 따른 성과보상기준은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 실적(파급효과(impact)나 산출실적이 아님)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 방법 등과는 무관함
- 따라서 성과지표의 설정은 보상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

- 성과지표의 설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음
 - ① 각 성과지표에 의해서 최종적인 지불조건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여 감소하는 행정비용, 새롭게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이 명확해야 할 것
 - ② 자치단체는 보상사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목표를 성과 지표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
 - ③ 보상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사회적 성과는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평가방법 설계시 검토요소)

- 내용적 측면
 - 측정 기간
 - 비교 대상
 - 성과에 대한 보정 가능성
 - 통계분석의 타당성 및 객관성
 - 측정 방법(변화량의 측정인가, 변화율을 측정한 것인지 등)
- 재무적 측면(행정비용 절감)
 - 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상사업 실시 전의 행정 비용
 - 보상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
 - 보상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에 대한 임팩트
 - 투자자의 이익(편익)

<표 3-5> 보상사업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요소(예시)

구분	정의	예시	구체적 지표(예)
투입 (input)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기관의 자원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자금 • 감옥 수 • 침대 수 • 교육 코스 등록 수
활동 (activity)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세미나 및 훈련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시설의 설립 • 특정인에게 제공된 훈련 수 •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열린 회의
산출 (output)	수익자가 실제로 제공 받은 훈련과 개입	실제로 열린 훈련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졸업자 수 • 취업 훈련을 받은 수행자 수 • 훈련과 교육과정의 수
성과 (outcome)	중장기적인 수익자의 변화	장기적인 취업여건 및 경제적 안정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 감소 • 건강 상태의 개선 • 약물이나 음주에 대한 의존감소 • 수입의 증가 • 취업 증가 • 문맹률 개선 • 계산 능력의 개선
파급효과 (impact)	넓은 의미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적인 성과	어떤 지역에서의 취업기회 개선(급여자수, 급여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 사이클을 단절 수준 • 범죄와 사회적 차별 사이의 상관성이 낮아지는 수준 • 사회적 약자의 범죄율이 인구와 비례하는 수준

*출처: hm-treasury.gov.uk, Magenta Book, 2011, p.22, 수정.

- 보상사업의 성과지표는 사회적 과제해결을 위한 금전적으로 가치 환산이 가능한 지표와 금전적인 가치 환산이 어려운 또는 굳이 금전적 가치를 환산할 필요가 없는 지표의 양자 간에 균형을 맞춘 복수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음(필요시)
- 즉, 반드시 모든 성과지표가 투자자에게 성과보상을 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한 지표일 필요는 없다는 것임
- 금전적으로 가치 환산이 가능한 지표는 향후 행정비용과 연결될 수 있는

재무적 편익을 산출할 수 있는 재무지표로 성과목표 달성시 성과보상의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성과지표임

- 금전적으로 가치 환산이 어려운 또는 필요없는 지표의 경우 성과목표가 지향하는 것은 보상사업이 사회적 과제해결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필요한 지표임

<표 3-6> 보상사업 비교대상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요소(예시)

방법	내용
비교 대상이 없을 경우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의 성과지표가 달성되면 비교대상이 없어도 성과보상을 해야 함. - 이 경우 성과분석이 매우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자치단체가 성과지표에 대해 지불약속을 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임.
해당 사업의 대상 집단과 유사한 집단의 과거 데이터에서 산출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의 대상집단과 비슷한 상황의 유사집단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대상 집단과의 비교자료로 활용함. - 비교 집단이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외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비교집단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해당 사업의 고객층을 대상으로 사업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 상태와 사업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으로 주로 설문을 사용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때에 사용함.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자에게 서비스를 받기 이전과 받은 후에 조사하기 때문에 제공한 서비스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 이 접근방법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질문 예시가 많이 존재하여 지표 개발이 용이하며 적용하기 쉬운 편임.
비교집단(사례)을 설정하여 사업실시 이후 비교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의 ‘대상 집단’과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비교 집단’을 선정하여 병행 관찰하는 방법임. - ‘대상집단’과 ‘비교집단’은 속성, 특성,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이 유사할수록 바람직함. - 결국 두 그룹은 ‘해당 사업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비교 집단 간 차이가 사업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보상사업의 최종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서는 근거 기준 및 단어의 정의나 해당 지표에서 어떤 지표가 적절한지, 또는 해당 사업의 핵심지표로는 무엇이 중요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정의를 <표 3-7>과 같은 예를 참고로 작성함

<표 3-7> 서울시 성과보상사업의 성과목표 체계(예시)

장기적 파급효과(Impact) : 사업 종료의 장기적인 효과

<대상자>

- 자립도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 개선

<정부>

- 대상 아동에게 지출될 수 있었던 잠재적 수급비, 특수교육비 등 막대한 행정비용 절감
(예: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능력 향상 시 1인당 약 1.5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더 많은 공공정책 추진 가능
- 결과와 무관하게 개입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확산 가능성 확인
-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도 정부(납세자)의 재정적 손실 회피

<사회>

- 관심의 사각지대에 소외되었던 아동에 대한 관심 제고
- 소외되었던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편입
- 공익적 투자시장 및 협치기회 확대



성과목표(Outcome) : 사업기획 시 합의된 성과목표

- 다음 두 가지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
 - 지적능력 향상 : 웨슬러검사로 측정하여 경계선지능 아동이 정상으로 개선될 경우
 - 사회성 향상 :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로 측정하여 문제행동척도이 감소될 경우
- 성과목표 달성률에 따라 성공/실패기준 세분화



산출목표(Output) : 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연계

- 매주 2회 담당 멘토와의 1대 1 교육 실시
- 매년 체육대회, 음악회, 공연관람과 같은 사회성 개발을 위한 단체 활동 실시
- 매 분기 수행실적을 운영기관, 투자자 등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작업



활동 : SIB 방식 및 개입 프로그램 도입

<SIB 방식의 도입>

- 민간의 선도적 참여로 정부의 사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성과중심의 효과적인 예방행정 도입

<장기 종합 프로그램 수행>

- 3년 간 관계형성, 심리치료, 정서회복, 사회성 개발, 인지능력 개발, 기초학습능력 향상 등의 종합적인 개입서비스 제공



사회적 문제 확인 :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

- 경계선지능(IQ 71~84) 아동은 정서불안, 학습부진으로 학교 및 사회부적응 비율 높음
- 그러나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경계선지능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수급자가 되는 비율은 일반아동의 15배
- 무엇보다 경계선지능 아동을 방치하였을 경우 시간이 지나 지적장애가 되는 경향이 높지 일 생애 걸쳐 막대한 사회비용이 발생
- 대상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부의 잠재적 행정비용도 막대하여 예방적 개입이 필요

4) 보상사업 사업비 산정

- 보상사업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해야 하며, 사업비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산정함. 이 중 성과평가비, 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으로 수립해야 하며 성과보상 비용, 운영기관운영 비용, 사업수행 비용 등 사업 성공시에 운영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성과보상이 지급되는 년도의 예산으로 수립해야함
 - 사업수행비: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운영기관운영비: 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해 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등)
 - 성과평가비: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제3의 평가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 성과보상비: 성과목표 달성시 운영기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영기관은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
- 기타: 이 외에 자문비, 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사업 성격에 따라 기타 비용 산정 가능
 - ※ 총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관련 법령·지침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필요시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용역 실시

<그림 3-7> 보상사업 사업비 산정 방법



- 보상사업 성과보상 비용 산정시 고려사항으로 원금보장 여부(보장범위 등), 적정 수익률에 대한 원가계산이 필요함
 - 원금보장 여부와 관련하여 보상사업은 도입취지나 목적상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단, 투자원금의 100%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 손실 제한을 둘 수 있음
 - 운영기관(투자자) 수익률과 관련하여 보상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책정 하되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상한은 연 15% 이내로 권장
- 성과보상금은 운영기관 공모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은 운영기관과 주관부서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해야 함

5)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함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보상사업 선정 및 민간투자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부록 <붙임-2>)참조
 -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부록 <붙임-3> ~ <붙임-6>) 참조
 - 평가지표, 평가방법, 성과보상 금액 등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사항
 - 보상협약(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나”~“라”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부서, 사업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장 등
 - 나. 관련 보상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 다. 지역금융,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 라.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당연직 위원은 “가”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함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해야 함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야 함

6) 보상사업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

- 자치단체장은 보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보상사업의 발굴 및 운영기관 선정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보상사업을 발굴 및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평가기준(부록 <붙임-4>) 참조
-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준용함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권장함

7) 보상사업 계약체결

-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비 및 산출내역
 -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
 -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방법 기획안의 차기 활용에 관한 권리
- 자치단체장은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 보상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보상을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함
- 보상사업의 평가기관 선정시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등 객관적인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받아야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그 밖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리서치 회사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전문기관을 선정

9) 투자자 유치

<표 3-8> 투자자의 SIB 자금투입 방식

재 원	자금투입 방식	설 명
투자자금 등	사모 또는 공모	관련 법규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
50인 이상 투자 (일반 주민 등)	온라인소액투자 (클라우드 펀딩)	관련 법규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
사회공헌 자금, 공익재단 기부금 등	기부	기부 처리 후 사업 성공시 상환하지 않고 차기 사업에 재사용

- 자치단체에서 SIB를 추진할 때,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게 됨. 다만 현행 법령상 투자금 조달시 공모를 지양하고 사모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 공모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불특정 주민 또는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게 되면 공모가 됨
-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한 모집행위가 되어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준수해야 함. 그 규제의 일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동일 상품 10% 이내 투자 제한, 각종 공시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받음
 - 투자의 권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설명서에 의해서만 가능
 -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금감원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받음
- 다만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에 해당하는 7억원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식의 경우에는 증권 모집의 특례를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개인 투자한도 제약으로 7억원 이상의 자금모집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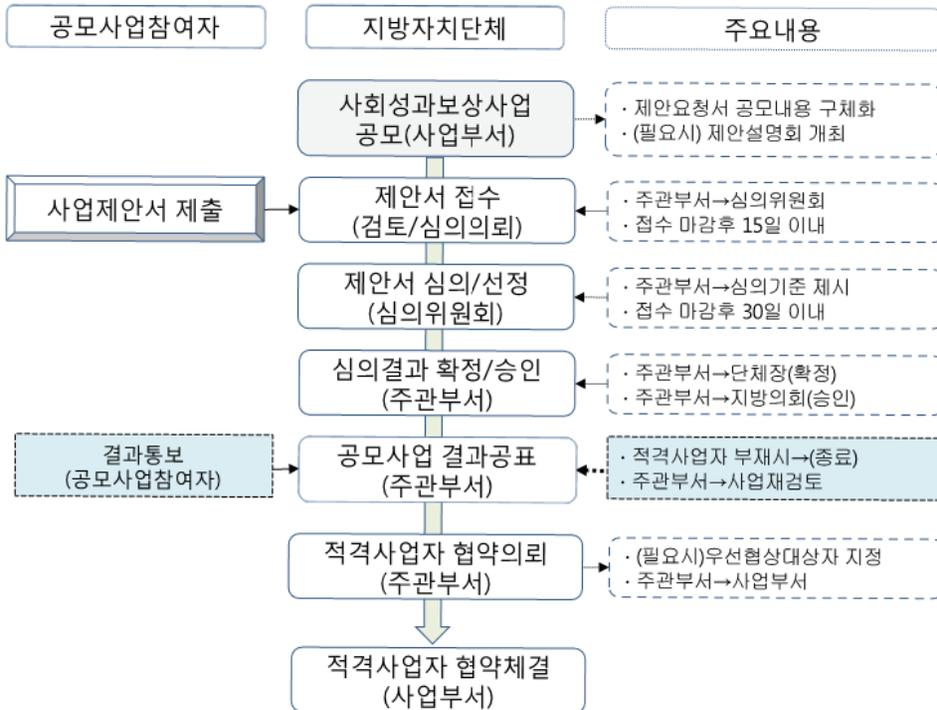
- 지정기부를 통한 SIB 사업자금 조달도 가능함. 기부를 통한 자금투입은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재무적인 상황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계약과 차이점이 있음. 통상적으로 차기 SIB 사업에 재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부 처리를 하며, 사업이 성공하여도 기업에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SIB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10) 운영기관 관리

- SIB는 민간이 사회문제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관리·감독을 지양해야 함
 - SIB에서는 투자자가 운영기관에 사업수행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관리·감독하게 됨
- 다만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3절 사회성과보상사업 공모 및 계약절차(협상에 의한 계약)

<그림 3-8> 보상사업 공모 및 계약절차 흐름도



1. 개요

1)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함

-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함
-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함
- 마. ‘평가분야’란 <붙임-4>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함

2. 협상에 의한 계약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3. 입찰과 계약대상자 결정

1) 입찰공고

-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함
 -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함

-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 무 여부에 관한 사항)
-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6) 제안서의 제출기간
- (7) 제안서의 내용
-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음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함

-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함

- (1) 과업내용
- (2) 요구사항
- (3) 계약조건
-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5) 제안서의 규격
-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평가

-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붙임-4>와 같음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붙임-4>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다.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음
-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
- 마. “라”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바. 평가요령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로 같음한다)를 구성해야 함
 -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 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함.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7)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 준용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가.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다.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협상적격자 통지

-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7) 협상 절차

-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기타 사항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
-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방계약절차를 준용함

제4절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 및 보상

1. 사업평가

1) 평가의 목적

- 보상사업의 평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이 보상사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 둘째,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지급하여 비용/편익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
- 보상사업의 평가범위는 사전에 운영기관과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약정한 정량적 평가지표만으로 한정함
- 다만, 평가기관은 향후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궁극적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성과를 창출하였는지 여부
 - 해당 보상사업 운영기관의 사업실적
 - 수혜대상자의 사업 만족도 등 주관적 평가

(보상사업 평가자 고려사항)

- 보상사업의 추진이 기존의 사업추진이나 행정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보상사업으로 제공된 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 보상사업의 추진으로 행정비용은 절감하였습니까?
- 보상사업 방식의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입니까?

2) 평가의 절차

- 보상사업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함
- 보상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보상사업 평가결과의 공정성/정확성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성과보상 지급을 결정

3) 평가결과의 활용

- 보상사업의 평가결과는 성과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함
- 보상사업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2. 성과보상

- 자치단체는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함
- 자치단체는 심의위원회에 검토·확정된 제3자 평가기관의 성과측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함

(성과보상 비용 산정시 고려 요소)

※ 성과보상금은 보상사업 공모시 사업자(운영기관)가 제안한 내용에 기초하여 발주기관(주관부서)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1. 원금 보장 여부

- 보상사업의 성격은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단, 투자 원금의 100% 손실은 발행하지 않도록 총 손실 제한을 둘 수는 있음
- 원금 보장 여부는 개별사업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 주체간 협의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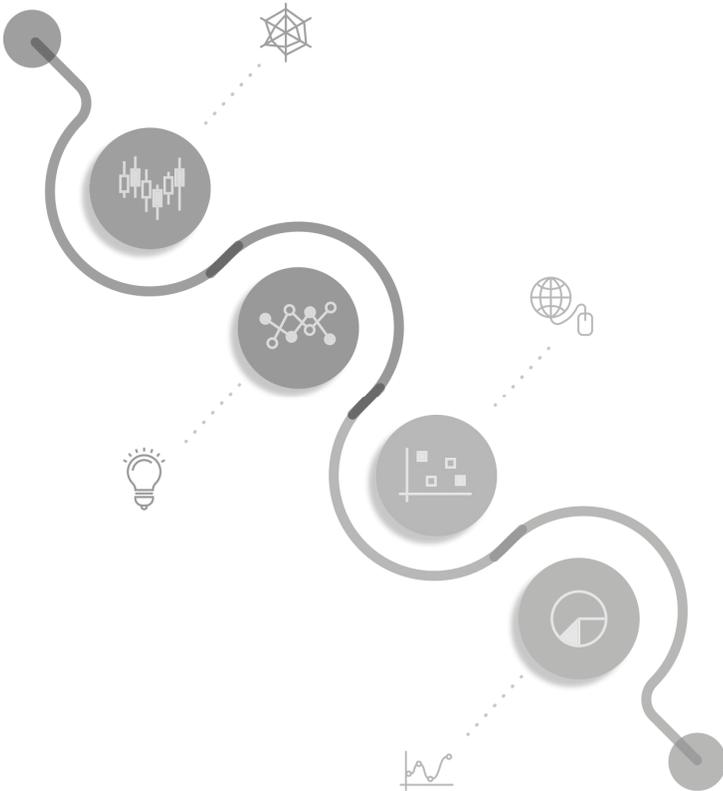
2. 수익률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책정하되 상한은 연 15% 이내로 함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보상사업 추진근거 마련

제2절 정책적 고려사항



제 4 장

정책제언

제1절 보상사업 추진근거 마련

- 새로운 제도나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나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나 추진체계의 보완 등을 통하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상사업의 경우도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문제의 예방 내지 선제적 대응에 따른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추진체계의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보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정비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하나, 이 연구에서는 제도측면,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1. 제도측면

- 보상사업은 기존의 관련법제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 있어야 하지만, 기존의 법제가 보상사업과 같은 새로운 방식(투자자 모집, 성과에 따른 사후 예산 지원 등)을 지원하는데 제약이 있음
 - 따라서 보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가칭)「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주요내용: SIB 기금 설치, 재정지원·세금특례 등 지원방안, 관리·감독 방안 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지원해야 함
- 한편,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법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보상사업을 추진

(서울시, 경기도 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절차, 지방의회 동의
를 통한 예산의 사후 지출, 계약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보
급할 필요성이 있음

- 보상사업은 기존 관련법제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
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규제개혁을 통한 보상사업 추진환경의 개선
이 요구되고 있음
 - 먼저, 보상사업에 대한 공익법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
며, 공인법인이 증여세 감면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특례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익법인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에 대한 우려없이 보상사업에 투
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을
통한 투여여건 확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상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가 보증주체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제조항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 보상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제한없이 크라우드 펀딩 허용,
50인 이상(공모) 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위 신고절차 간소화 등 검토

2. 운영측면

- 보상사업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사업 수행이후 성과에 따른 예산집행을
하는 등 기존의 사업추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사업관리에
있어서도 성과측정, 자원조달 등에 추가적인 운영관리방법을 고려해야함
 - 먼저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완,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평가전문기관의 경우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비용 데이터를 계량화·표
준화하여 ‘사회적 비용DB’ 구축과 이를 기초로 한 보상사업의 개발 및 원
가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국은 온라인 데이터센터를 구축·공개하여 공공사업 기획에 활용)

- 한편, 보상사업은 기존의 “예산편성 후 집행”방식의 예산사업이 아니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보상(사업비+인센티브)을 정부재원(기금 또는 예산)에서 지출하는 구조임
 - 따라서 보상사업의 추진시 사전에 해당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기금 설치를 통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다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칭)“사회혁신기금”과 같은 중앙 차원의 마중물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 사업이 국가사무인 경우 각 부처의 예산을 사회혁신기금에 반영하여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0~100%를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영국의 경우 투자금의 30% 수준의 소득세 감면과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 감면 병행)
 - 또한, 기업의 사회공익재단, 지역재단, MG 희망나눔 공익재단 등 사회공헌자금을 통한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및 방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보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협력 내지 협업을 위한 협의체(「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수준)

제2절 정책적 고려사항

- 투자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사업과 같은 사회적 투자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 필요(공익법인·금융 규제개선, 세금감면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등)
- 평가 객관화: 보상사업의 성과 달성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객관적 평가기관 선정 및 지표설계 등이 필요(평가 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신뢰성 확보)
- 재정 지원: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재정보호 및 보상사업 기금설립 등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사회혁신기금 설치 등 지원책 마련)
- 사업 확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보상사업은 향후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사업 종료 후 우수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민간 자율성 확보: 자치단체가 기관선정·운영·평가 등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보상사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우려(민간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참고문헌】

- 곽제훈. 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국제개발협력, 2014(3), 55-74.
- _____. 2012-2017.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집필모음 사이트(<http://www.projustice.kr/sib>).
- _____. 2016. SIB 자문서. 한국개발연구원.
- 김갑래. 2017. 영국 청년고용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성공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14호.
- _____. 2012.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Issue paper 12-04.
- 김갑래·박수연. 2013.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 노희진. 2014. “한국형 사회영향채권 도입방안”. PERSPECTIVE 2014 Vol. 6, No. 1. 자본시장연구원.
- 노희진·천창민·안수현·조영복, 2013, “성과연계형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구축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학술연구용역보고서.
- 노혜진. 2015. 모금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7-236.
- 문진수. 2012. 사회혁신채권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연구. 서울연구원.
- _____.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서울: 북돋음.
- 박노욱. 2009.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2009.1, 한국조세연구원.
- 박인화. 2013.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보건복지이슈 & 포커스, 제212호 (2013-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오민수. 2013. 영국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의 정책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 윤지현. 2016.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공익법인제도 개선 공청회. 조세재정연구원

- 원시연. 2011.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제117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재광·서상목·문진수·강선영. 2013. 경기도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방안. 경기 개발연구원.
- 서울시. 2017.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내부자료.
- _____. 2014. 아동복지서비스에 SIB 첫 도입...18일 MOU 체결, 보도자료(2014 2.19).
- 손원익. 2014.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조세재정BRIE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심상달. 2010.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채용조달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0-09, 한국개발연구원.
- 전용일·김규림. 2015.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국내 적용과 발전방향”. 한국고용복지연 금연구원 Working paper(2015-1).
- 조영복·신경철. 201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사회적 기업 연구, 7(2), 105-133
- 추병주·정운수. 2009. “민간위탁의 단계별 운영실태분석: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2호 p.1-31.
- 최석현·김희연·이재광·하보란. 2013.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정책연구 2013-49. 경기개발연구원.
- 팬임팩트코리아. 2015. 경기도 SIB 사업 보고서 - SIB 운영부문. 경기복지재단.
- _____. 2016. 사회성과보상사업 해외사례 조사 및 후속사업 후보군 발굴. 서울특별시.
- 한국사회투자. 2014.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투자준비 완료”.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17. 내부자료 및 홈페이지(www.mois.go.kr) 검색자료
- 법제처. 2017. 법령 및 조례검색 홈페이지(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본재단. 2017. 2017사업실시 가이드라인. 재단 홈페이지(nippon-foundation.or.jp).
- Cabinet Office. 2013. Achieving Social Impact at Scale: Case Studies of Seven Pioneering Co-mingling Social Investment Funds.
- Department for Work & Pension. 2016.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DWP Innovation Fund: Final report.

G8 UK. 2013. Social Impact Investment Forum: Outputs and Actions.

HM Government. 2013. Growing the Social Investment Market: The Landscape and Economic Impact.

Social Finance. 2013. Investing in social outcomes: development impact bond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Social Finance.

【 부록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등

붙임-1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의회 동의안 서식

○○○사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0.00

제 출 자 : 기관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가.

 - 나.

 - 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기타사항

붙임-2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정 심의의뢰서(안)

사업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 및 범위 ○ 사업 계획 개요 		
사업기간	○ 20 . . . ~ 20 . . . (년 개월)		
사업비	○ (산출내역 개요 포함)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정의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성과측정 		
사업수행 기관검토	○ (사업 수행 역량이 있는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결과 기재)		
타당성 분석결과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 개요 기재)		

- 별첨자료(예시) :
1. 사업계획서
 2. 자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기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붙임-3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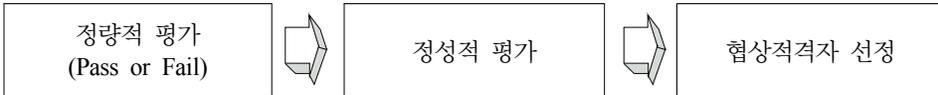
사 업 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비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개요			
지원기관1 (기관명기재)	○ (사업 수행방안, 투자자 유치방안 등 기재)		
지원기관2			
지원기관3			
지원기관4			

별첨자료(예시) : 1.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붙임-4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평가 기준(예시)

평가 절차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가산점 제외)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이 평가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사업 제안·기획기관 그밖에 필요한 경우 	5	

-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절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붙임-5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사 업 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운영기관명 (대표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비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개요 (지정시 해당 기관 제안서 개요)			
지원기관1 (기관명기재)			
지원기관2			
지원기관3			
지원기관4			

붙임-6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평가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계			100
역량평가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금융 및 투자 분야 전문성 ■ 사회가치 평가 및 측정 분야 전문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 분야 이해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5
조직평가	주관부서, 운영기관, 수행기관과의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측면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진 경력 및 겸직 여부 ■ 재정 측면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및 기부 내역 ■ 기존 사업 및 활동 내역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5
	인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전문 인력 보유상태 ■ 평가 참여 인력 규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5
	재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도 재정현황⁵⁾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0

5) 설립 3년 미만의 경우 재정운영계획 등 대체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참고-1

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이하 “○”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자치단체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이하 “□□”라 한다)가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단체장)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의회 의원 2명(총괄부서 및 소관부서 소속 상임위)
2. ○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실·국/과장 등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자치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총괄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상사업 실무단) □□단체장은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관계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단체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13조(운영기관 선정) ① □□단체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자치단

체)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해당)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계약의 내용) □□단체장은 제13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 내용

제15조(평가기관 선정) □□단체장은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성과보상) □□단체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단체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

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단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실비변상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SIB관련 규제

□ 공익법인의 투자 관련 규제

규제완화 방안	“공익법인법”상 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이 SIB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등 확보 ▶ 주무관청 대상 안내서 배포, 설명회 등 병행 	<p>제14조(감독)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p>

규제완화 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B를 증여세 부과 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 ▶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으로 규정 	<p>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p> <p>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p>

□ 금융 규제

규제완화 방안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제
<p>▶ 자치단체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 SIB 사업은 금액 제한 없이 증권 모집의 특례 적용</p>	<p>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억원 ** 금융위 신고 *** 재무상태의 공시 등</p> <p>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공모형(50인 이상) SIB 사업은 금융위 신고절차 간소화 * 약식 신고서 제출, 기간 단축 등</p>	<p>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p> <p>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p>

참고-3

SIB보상사업의 발전과정

■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

- ▲ 세계 최초 SIB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8년 뉴질랜드의 경제학자인 로니 호레시(Ronnie Horesh)가 현재의 SIB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안⁶⁾
- ▲ 그는 이를 사회정책채권(Social Policy Bond ; SPB)으로 이름 붙였으며, 무엇보다 민간 투자자 간 중도 거래가 가능한 매개체임을 강조

■ 아이디어의 재논의

- ▲ 2006년 이후, 아쇼카(Ashoka)의 아서 우드(Arthur Wood)와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의 기에르모 매클린(Guillermo Maclean)은 사회성과에 대해 공공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성과기반 수익 모델(contingent return model)을 제시⁷⁾
- ▲ 이후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피터 휠러(Peter Wheeler)와 빅소사이어티캐피탈(Big Society Capital)의 데이비드 로빈슨(David Robinson) 등은 정부가 예방적인 공공사업을 통해 절감된 사회비용 중 일부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도록 제안

■ 아이디어의 실현

- ▲ 영국의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Ltd)는 위의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영국 법무부와 함께 세계 최초의 SIB 사업을 기획하고, 2010년 피터버러시에서 첫 SIB 사업을 개시하게 됨
- ▲ 이후 SIB는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정책 추진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며 북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아시아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SIB 정책 도입)

6) Ronnie Horesh, Social Policy Bonds, (New Zealand Branch Australian Agricultural Economics Society, 1988).

7) Arthur Wood, 「A New Template for Funding Philanthropy?」, (Ashoka UK, 2008).

참고 사례-1	국외 SIB 주요사례
--------------------	--------------------

유형	국가	주 제	개시	기간	
일자리	네덜란드	청년 실업률 감소	2013	2년	
	독일	청소년 실업률 감소	2014	2년	
	벨기에	이주 외국인 취업 지원	2014	2년	
	캐나다	미혼모와 그 자녀의 생활환경 개선	2014	5년	
	스위스	난민 취업 지원	2015	5년	
	영국		니트족 생활환경 개선 및 취업능력 향상	2015	3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무직자 취업지원	2015	-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피해여성 취업지원	2015	3년	
복지	미국	노숙인 생활환경 개선	2014	5년	
		저소득 임산부 지원	2016	4년	
		양육자의 약물복용 감소	2016	4.5년	
	영국	위기청소년 가정이탈 방지	2012	5년	
		입양 활성화	2013	10년	
		시설거주 아동 원가정 복귀	2014	5년	
보건	영국	만성질환자 삶의 질 향상	2015	7년	
		노인 우울증 개선	2015	4년	
학습	미국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	2014	17년	
	이스라엘	취약계층 공대 재학생 중퇴율 감소	2015	8년	
	포르투갈	저소득가정아동 학업성취도 향상	2015	1년	
범죄	영국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	2010	8년	
	미국	위험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 및 취업 지원	2014	7년	
기타	핀란드	공공기관 근무환경 개선	2015	3년	

- (일자리) 청소년 미혼모 취업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 취업 지원, 베이비부머 취업률 제고,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등

- (에너지·환경) 건물 에너지 절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
- (보건·복지) 어르신 자살예방,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청소년 흡연을 감소, 아동학대 예방

참고 사례-2

국외: 일자리 창출관련(영국 근로연금부 혁신기금)

□ 개요⁸⁾

- 2011년, 영국의 근로연금부는 취약계층의 청소년 중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000만 파운드 규모의 혁신 기금을 조성
- 혁신기금은 SIB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3년의 기간에 걸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10개의 SIB 사업을 추진함

<영국 근로연금부 혁신기금 SIB>⁹⁾

구분	지역	수행기관
1 차 실행 사업	1 그레이터 머지사이드	그레이터머지사이드 연계파트너십 (Greater Merseyside Connexions Partnership)
	2 버밍엄	버밍엄취업기술과훈련네트워크 (Birmingham Employment Skills and Training Network)
	3 쇼어디치, 런던	내일의사람들 (Tomorrow's People)
	4 노팅엄	노팅엄·노팅엄셔미래 (Nottingham and Nottinghamshire Futures)
	5 스트래트퍼드, 뉴엄, 런던	지역사회고리 (Community Links)
	6 퍼스, 킨로스	퍼스와의지역구와이엠씨에이(Perth and District YMCA)
2 차 실행 사업	7 그레이터 맨체스터	칠드런아우어울티메이트인베스트먼트자선 (The Charity Children Our Ultimate Investment)
	8 사우스 웨일즈	난독증실행과통합 (Dyslexia Action and Include)
	9 렘스밸리	어드바이자 (Adviza)
	10 런던 서부	6개 자선단체 및 지역공동체

8) Emma Tomkinson, 「Social Impact Bonds in the UK」, Charity Finance Yearbook, 2014.

9) Insight Research and Consulting, 「Innovation Fund pilots qualitative evaluation: Early implementation findings」,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UK, 2014.

- 근로연금부의 혁신기금으로 추진된 SIB는 모두 동일한 성과지표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되며 대상 청소년들이 니트족으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구성 강화, 자신감 상승 및 동기 부여 등 교육 및 취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됨

<영국 근로연금부 혁신기금 SIB의 성과지표 및 기준>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태도 및 성취도 - 자격증 취득률 - 취업률 및 유지율 		
	성과기준	성과기준	지급 가능 최대 금액(파운드)
		1차 실행 사업	2차 실행 사업
학업태도		·	700
출석률		1,300	1,400
학교에서의 생활태도		800	1,300
국가 자격 및 학점 체제 (QCF: 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 입문 자격 취득		·	900
기본 기술		·	900
국가역량체계 (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레벨1 취득		700	1,100
NQF 레벨2 취득		2,200	3,300
NQF 레벨3 취득		3,300	5,100
NQF 레벨4 취득		2,000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대상자들의 영어능력 향상		1,200	·
취업 성공 (13주 지속)		2,600	3,500
취업 성공 (26주 지속)		1,000	2,000
대상자 1인당 지급 가능 최대 성과금		8,200	11,700

- 혁신기금으로 진행된 10개의 SIB 중 그레이터 맨체스터와 탬스밸리 지역에서 실행된 사례의 성과결과가 보고서¹⁰⁾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정확한 성과지표 달성률 및 지급된 성과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 그레이터 맨체스터 SIB

- 사업 대상자 개요
 - 총 제공 대상자 인원: 위기청소년 1,317명
 - 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 5개 지역정부내 총 39개의 학교 참여
- 결과
 - 칠드런 아우어 인베스트먼트 자선에서 실시한 SIB는 출석률과 생활태도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 대상자 62%의 생활태도와 출석률이 향상되었으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연령의 약 83%가 성과기준에서 명시된 자격증 취득에 성공함
 - 해당 SIB는 근로연금부에서 제시한 긍정적 성과를 약 3,588개 도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대상자 1명 당 약 2.77개의 긍정적 성과를 도출 한 것으로 집계됨

□ 탬스밸리 SIB

- 사업 대상자 개요
 - 총 제공 대상자 인원: 위기청소년 1,778명
 - 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 9개 지역정부내 총 42개의 학교 참여
- 결과
 - 어드바이자 SIB를 통해 지원 받은 위기 청소년은 학업 태도와 레벨 1 자격증 취득에서 특히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SIB는 근로연금부

10) Social Finance, 「The Energise and Teens&Toddlers Programmes 2012-2015」, Social Finance, 2016.

에서 제시한 최소 26주 이상 취업 상태 지속 기준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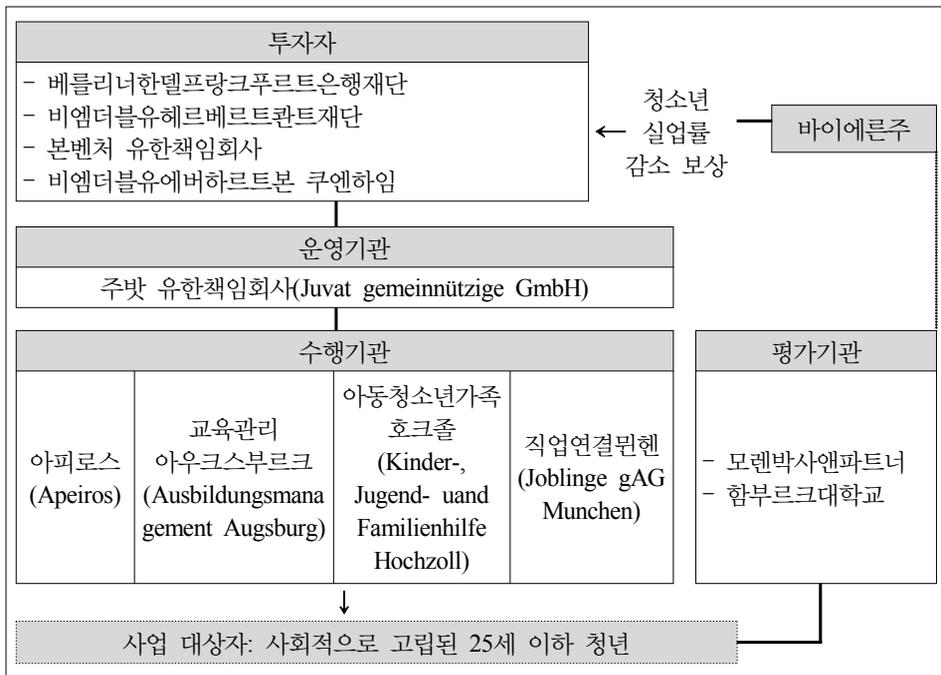
- ※ 대상자 55%의 학업 및 생활태도가 향상되었으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연령의 약 70%가 성과기준에서 명시된 자격증 취득에 성공함
- 해당 SIB가 근로연금부에서 제시한 성과기준에 따른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음

참고 사례-3	국외: 일자리 창출관련(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
----------------	----------------------------------

□ 개요¹¹⁾

- 2013년 9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는 학업중단 및 취업실패로 사회와 단절된 25세 이하의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2년 4개월 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IB를 개시

<아우크스부르크시 SIB 구조>



11) “Social impact bond(SIB) in Augsburg, Germany”, Emma Tomkinson 블로그,
 <<https://emmatomkinson.com/2014/08/20/social-impact-bond-sib-in-augsburg-germany/>>,
 2014.8.20.

<아우크스부르크시 SIB의 성과지표 및 기준>

성과지표	- 취업 혹은 인턴직 합격률(사회보험 및 건설업에 한함) - 취업 혹은 인턴 최소 9개월 이상 지속 ※ 아우크스부르크시에 위치한 기업 취업으로 제한됨
성과기준	- 최소 20명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공으로 간주

□ 결 과¹²⁾

- 사업 설계시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됨에 따라 독일 바이에른주의 노동사회 가족통합부는 투자 원금과 약속된 인센티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 비영리기관이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성공으로 지급된 성과보상금은 다른 사업에 재사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

12) juvat, 「Overview-finalization SIB Germany, English」, juvat, 2016.

참고
Q&A

(SIB)보상사업의 원칙과 참여구조

- 보상사업 설계시 고려해야 할 원칙
 - 보상사업(SIB 사업)에 관심이 많은 정부 및 민간기관 관계자들이 각자 참여 가능한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의문을 가질 수 있음. 그 동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 또는 민간위탁 등의 사업방식을 통하여 수행하였음
 - 그러나 보상사업의 경우, 투자자, 운영기관, 수행기관 등 다소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는 여러 주체들의 참여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기존 사업방식과는 다소 생소한 추진방법 및 절차가 실무담당자들에게는 보상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
 - Q&A에서는 보상사업 설계 및 추진시 고려해야할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상사업 참여기관의 역할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보상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으나, 그 장점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원칙-1> 공공사업 위험의 이전 또는 감소

- 정부(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상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이 지고 가야 할 사업실패의 위험을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예산을 쓰는 민간재단도 정부 및 공공기관과 같은 SIB 보상사업의 성과보상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임)

2. <원칙-2>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정부(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상사업의 추진에 따를 수 있는 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민간과 계약 체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만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보상사업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되며, 민간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된 것임. 만약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보상사업 실패시 그 책임을 정부나 공공기관에 전가할 수 밖에 없음. 이는 계약주체간 법적 분쟁은 물론 보상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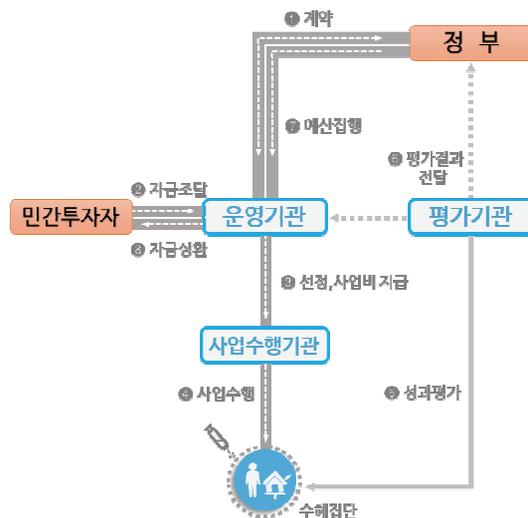
3. <원칙-3> 평가의 객관성 확보

- 보상사업은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만 사업결과의 정확한 측정과 이에 근거한 투명한 보상(예산집행), 그리고 공개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임

□ 보상사업 Q&A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투자자가 될 수 있나?

<원칙-1>에 위배되어 권장하지 않는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상사업의 투자자가 될 경우 결국 사업의 리스크는 납세자가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예산구조상 공적 기관이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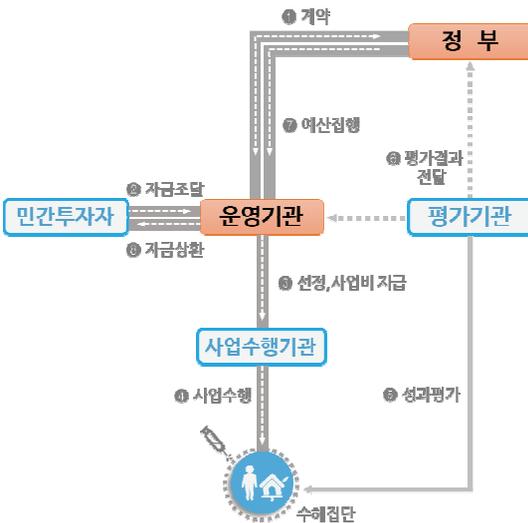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했을 때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공공기관 투자자가 성과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문제가 된다. 성과 보상 없는 보상사업의 사례는 성과보상을 토대로 유입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잠재적 투자자의 동기를 약화시킬 뿐이며, 성과보상을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보상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성과보상이 없다면 민간이 투자자일 경우 민간이 자체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면 되고, 공공이 투자자일 경우 그냥 일반 예산사업으로 보상사업은 아니다.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운영기관이 될 수 있나?

<원칙-2>에 위배되어 권장하지 않는다. 운영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수행기관의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에 직접 간섭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사업실패의 책임도 같이 져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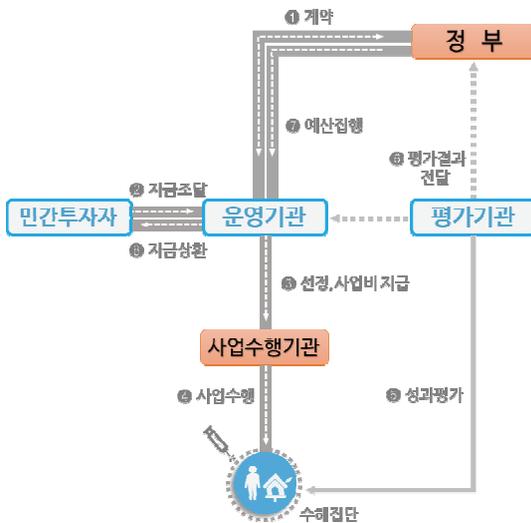


또한 운영기관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준조세와 다름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기관도 운영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해 설립된

모금기관(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법에 의해 정부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기관은 세금이 아닌 민간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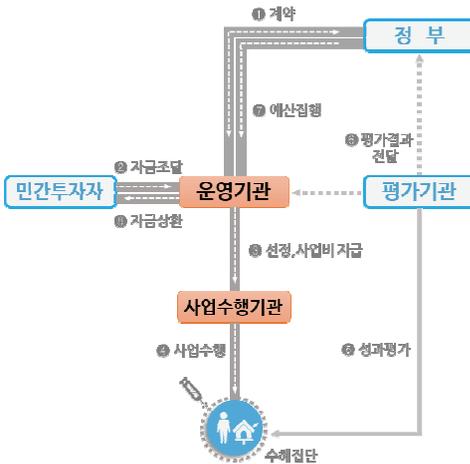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수행기관이 될 수 있나?

<원칙-2>에 위배되어 권장하지 않는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민간이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싶으면 보상사



업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예산사업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성과 달성에 자신이 있어 직접 수행하고자 한다면 굳이 민간의 돈을 끌어와 투자자에게 성과보상을 해줄 이유도 없다.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은 민간 수행기관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운영기관이 동시에 수행기관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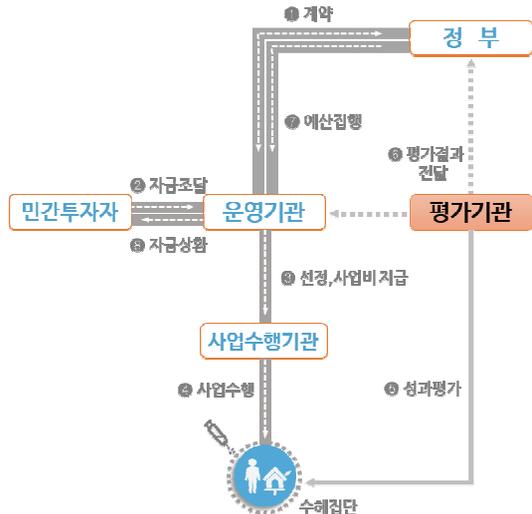


<원칙-2>에 위배되어 권장하지 않는다. 이유는 운영기관이 수행기관 역할 까지 하게 되면 수행기관을 관리할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정부는 운영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운영과 수행은 그 성격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고, 업무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한 기관이 모두 맡아 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운영기관은 사업을 설계하고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 수행기관은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른 참여기관 또는 유관한 곳에서 평가기관을 해도 되는가?

<원칙-3>에 위배되어 권장하지 않는다. 평가기관은 다른 참여기관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독립된 평가기관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 투자자 등이 성과측정을 한다면 도출된 결과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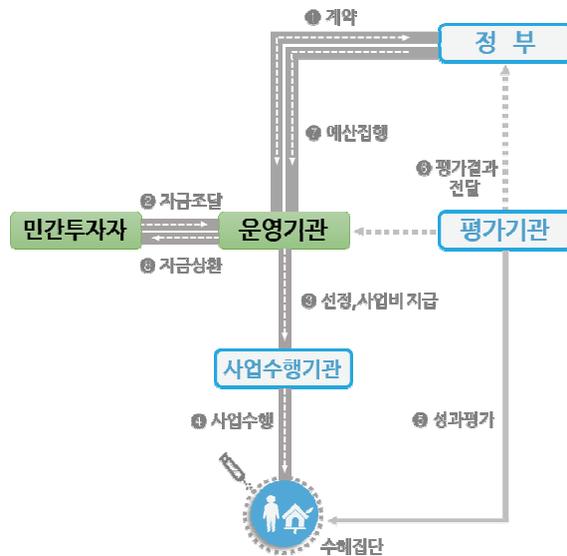
별도의 측정자가 필요 없고, 결과 조작이 어려운 국가통계를 지표로 사용하는 SIB 사업의 경우는 평가기관이 없는 것도 상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독립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측정과 성과의 검증을 담보하는 것이 정책의 공신력과 신뢰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6. 운영기관이 동시에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가능하나 예외는 있다. 일단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사업결과에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운영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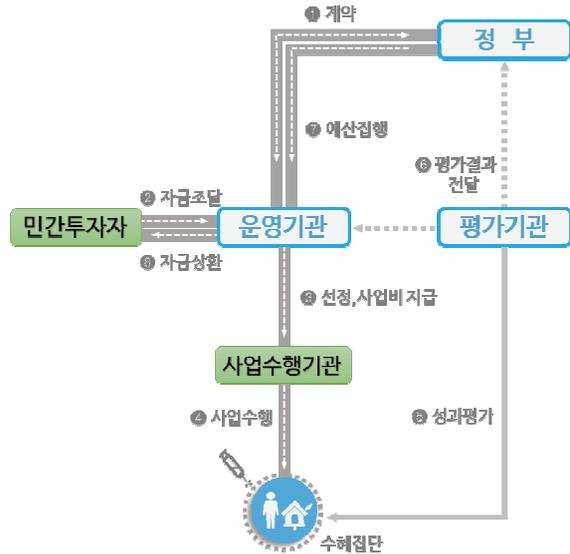
예외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 증권사, 대기업과 같이 영리적 투자활동을 본업으로 삼는 기업의 경우

는 운영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공 자체가 자신의 본업인 영리활동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성과기준이나 운영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이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경우 해외 사례처럼 순수한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투자자가 동시에 수행기관이 될 수 있는가?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사업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수행기관이 누가 되든 정부가 목표로 한 공공의 성과만 달성한다면 사회적으로는 유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수행을 하든 수행기관을 추천하든 관계가 없다.



물론 이는 원칙적인 논거이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투자자가 수행기관을 추천만 하는 경우는 문제가 적지만, 투자자가 직접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사업의 투자자인 수행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아무리 투자자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사업의 올바른 관리와 성과목표 달성이라는 의미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